

## 별첨 : 당헌개정안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 조문	조문 개정안
<p>제 2절 전국당원대회</p> <p>제 8조(지위와 권한)</p> <p>① 전국당원대회는 우리 당의 최고의결기관입니다.</p> <p>② 전국당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집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당의 합당과 해산 등 당 조직의 진로에 관한 결정</li> <li>2. 전국운영위원회 또는 당 대의원대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, 의결</li> <li>3. 강령과 당헌의 개정</li> <li>4. 공동운영위원장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비례대표 후보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 선출</li> <li>5. 정당법 제3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제명</li> </ol>	<p>제 2절 전국당원대회</p> <p>제 8조(지위와 권한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전국당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집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<b>전국위원회</b> 또는 당 대의원대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, 의결</li> <li>3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4. <b>공동대표와 당무위원</b>의 선출</li> <li>5. (문구변경 없음, 단순 분리) <b>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비례대표 후보 및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의 선출</b></li> <li>6. 정당법 제3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제명</li> </ol>
<p>제 3절 당 대의원대회</p> <p>제 12조(당 대의원대회의 권한)</p> <p>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연간 사업 및 예산과 결산의 보고</li> <li>2. 연간 예산결산안의 의결</li> <li>3. 연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</li> </ol>	<p>제 3절 당 대의원대회</p> <p>제 12조(당 대의원대회의 권한)</p> <p>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~4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5. <b>당무위원회와 전국위원회</b>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, 의결</li> <li>6~7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

<p>4. 상벌위원회, 선거관리위원회, 예산결산위원회, 교육위원회의 위원 선출</p> <p>5.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, 의결</p> <p>6. 중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하여 전국당원대회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</p> <p>7. 기타 중요한 결정</p>	
<p>제 4절 전국운영위원회</p> <p>제 14조(지위와 구성)</p> <p>① 운영위원회는 당의 일상적인 협의 및 의결기관입니다.</p> <p>② 전국운영위원회는 공동운영위원장과 전국사무처장, 공동정책위원장, 광역시·도당의 공동운영위원장 2명, 창당준비위원회의 운영위원장 2명, 시·군·구 당원 모임에서 전국 당원 비율의 2% 당 (인접한 시·군·구 당원 모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) 1명, 청년모임 대표자 2명, 청소년모임 대표자 2명으로 구성합니다.</p> <p>③ 전국운영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.</p>	<p><b>제 4절 전국위원회</b></p> <p>제 14조(지위와 구성)</p> <p>① <b>전국위원회</b>는 당의 일상적인 협의 및 의결기관입니다.</p> <p>② <b>전국위원회</b>는 <b>공동대표</b>와 전국사무처장, 공동정책위원장, 광역시·도당의 공동운영위원장 2명, 창당준비위원회의 운영위원장 2명, 시·군·구 당원 모임에서 전국 당원 비율의 2% 당 (인접한 시·군·구 당원 모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) 1명, 청년모임 대표자 2명, 청소년모임 대표자 2명으로 구성합니다.</p> <p>③ <b>전국위원회</b>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.</p> <p>④ <b>2020년 선출되는 당무위원에 한하여 당무위원 임기 동안 전국위원이 됩니다.</b></p>
<p>제 8절 운영위원장 및 사무처장</p> <p>제 22조(전국운영위원장)</p> <p>① 당에는 전국공동운영위원장 2인을 둡니다.</p> <p>② 전국공동운영위원장은 당을 대표하되, 그 중 1인을 상임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정당법상 대표자로 합니다.</p> <p>③ 전국공동운영위원장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.</p>	<p>제 8절 <b>공동대표</b> 및 사무처장</p> <p>제 22조(<b>공동대표</b>)</p> <p>① 당에는 <b>공동대표</b> 2인을 둡니다.</p> <p>② <b>공동대표</b> 중 1인은 정당법상 대표자로 하고 다른 1인은 <b>당무위원장으로 하되 1년씩 순환</b>합니다.</p> <p>③ <b>공동대표</b>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.</p>

<p>1. 전국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의사진행</p> <p>2.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</p> <p>3. 기타 당헌·당규에 의해 주어진 권한</p> <p>④ 전국공동운영위원장은 당원직선으로 선출합니다. 다만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전국운영위원회 의결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⑤ 전국공동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. 다만 제 4항 단서에 의해 선출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임기로 합니다.</p>	<p>1. <u>당원을 대표하고 당무를 총괄</u></p> <p>2. <u>당무위원회</u>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</p> <p>3. <u>당무위원회와 전국위원회</u>의 소집과 의사진행</p> <p>4. <u>전국사무처장의 추천</u></p> <p>5. 기타 당헌·당규에 의해 주어진 권한</p> <p>④ <u>공동대표</u>는 당원 직선으로 선출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.</p> <p>⑤ <u>공동대표의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당무위원 중 다득표자가 승계하여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수행합니다.</u></p> <p>⑥ <u>공동대표의 임기 종료 후에도 결원이 있는 경우 전국위원회는 차기 공동대표 선출 전까지 권한을 대행할 임시 공동대표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.</u></p>
<p>제 8절 운영위원장 및 사무처장</p> <p>제 23조(전국사무처장 및 전국사무처)</p> <p>① 당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전국사무처를 두고, 전국사무처에 전국사무처장을 둡니다.</p> <p>② 전국사무처장은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합니다.</p> <p>③ 전국사무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.</p> <p>④ 전국사무처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.</p>	<p>제 8절 운영위원장 및 사무처장</p> <p>제 23조(전국사무처장 및 전국사무처)</p> <p>① 당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전국사무처를 두고, 전국사무처장을 두어 <u>전국사무처를 운영합니다.</u></p> <p>② 전국사무처장은 <u>공동대표의 추천으로 당무위원회가 임명</u>하며, <u>공동대표의 발의와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해임</u>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③ 전국사무처장의 임기는 <u>공동대표의 퇴임까지</u>로 합니다.</p> <p>④ 전국사무처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.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<u>제 9절 당무위원회</u></p> <p><u>제 24조(당무위원회)</u></p> <p>① <u>당무 집행에 관한 책임기관으로 당무위원회를 둡니다.</u></p>

	<p><u>② 당무위원회는 공동대표를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합니다.</u></p> <p><u>③ 당무위원회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당의 정치활동 및 당무의 운영</u></li> <li><u>2. 논평 등 당의 공식 입장 승인 및 발행</u></li> <li><u>3. 전국위원회와 당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</u></li> <li><u>4. 전국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</u></li> <li><u>5. 전국사무처장의 임면</u></li> <li><u>6. 기타 당헌·당규에 의해 주어진 권한</u></li> </ol> <p><u>④ 공동대표 외의 당무위원은 당원 직선 투표의 다득표 순으로 최소 득표율 이상을 획득한 8명을 선출하되 여성이 1/2 미만인 경우 여성 차점 득표자를 추가 선출하여 여성 비율이 1/2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. 이에 따라</u></p> <p><u>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무위원의 수가 증감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<u>⑤ 공동대표 외 당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합니다.</u></p> <p><u>⑥ 결원으로 공동대표를 포함한 당무위원의 수가 6인 미만이 될 경우 6인이 되도록 전국위원회가 당무위원을 선임하여 잔여 임기를 수행합니다.</u></p> <p><u>⑦ 위 ④항의 최소 득표율 기준과 투표 방법은 당규로 정합니다.</u></p>
<p>제 10절 겸임금지</p> <p>제 28조(겸임금지)</p> <p>전국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상벌위원회, 선거관리위원회,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직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.</p>	<p>제 10절 겸임금지</p> <p>제 28조(겸임금지)</p> <p><b>당무위원과 전국위원회 위원</b>은 상벌위원회, 선거관리위원회,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직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.</p>